



2023년 상반기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

우리 공단과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(본 공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“기간제계약직” 채용 공고임)

2023. 2. 6.

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

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분야별 채용 요건

제한경쟁채용

구분	직급	분야	근무지	근무기간	인원	응시자격요건 (접수마감일 기준 모든 조건 충족)	
기간제 계약직	경력	5급	사무(홍보)	서울	12개월	1	•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
	경력	5급	귀어귀촌 정책상담	서울		1	• 수산어촌어업 분야 경력 20년 이상인 자 • 만 55세 이상인 자(고령자)
	신입	5급	선박(항해)	강릉	12개월	1	• 6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• 상급안전교육,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모두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(23.3.31.) 기준 유효하여야 함
				인천		1	•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 능한 자
총계					4		

일반경쟁채용

구분	직급	분야	근무지	근무기간	인원	응시자격요건 (접수마감일 기준 모든 조건 충족)	
기간제 계약직	신입	5급	사무(홍보)	서울	12개월	1	• 해당분야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
				인천	12개월	1	
			사무(사업관리)	강릉	9개월	1	
				창원	12개월	1	
			사무(수산)	강릉	12개월	1	
총계					5		

□ 공통 자격요건

구분	응시자격요건(접수마감일 기준 모든 조건 충족)
학력 및 전공	· 제한 없음
연령	· 제한 없음
병역	·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어학점수	· 제한 없음
기타	·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- 세부 직무 및 수행업무 등 직무기술서 참조
- 전 직무 본사 및 전국 지방조직(지사, 센터 등), 선박사무소(선박에 限함) 순환근무 가능
- 수행업무는 배치되는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름
- **숙소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할 것**
- 선박(항해) 직무는 2주 연속 출항
- 지사주소: 서남해지사(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14(해안동1가) 목포국제여객터미널 2층)
 동남해지사(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46(오동동) 삼성생명빌딩 6층)
 제주지사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-65(영평동)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2층)
 동해지사(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(홍제동) 강릉시청 15층)
 기타 센터 및 지원단 상세 주소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

□ 우대사항 및 자격증

항목	가산점	적용전형	내용	
우 대 사 항	취업지원대상자	법령에 따름 (5%, 10%)	전 전형	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	장애인	5%	서류/면접	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	기초수급자	2%	서류	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	비수도권 지역인재	1%	서류	• 최종학력(석사이상은 학사 기준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자 (기재부 비수도권 지역인재 매뉴얼 준용)
	해당지역* 거주자	2%	서류	• 공고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합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지역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

사회형평적 인력 채용목표제	서류 /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형평적 인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 • 모집단위별 사회형평적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에서 합격선 -20점 이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20%(소수점 올림)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
양성평등 채용목표제	서류 /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집단위별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서류전형, 필기전형 선발인원의 30%(소수점버림)에 미달하는 경우, 합격선 -3점 이내 목표미달 성별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
자격증	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무별 가점 자격증 리스트 참조

*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지역을 제외한 지원분야 근무지만 해당하며 근무지로 명시된 지역을 기준으로 인정여부 확인 예정

※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추후 법정 또는, 공인된 기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

※ 우대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

□ 근무조건

구분	직급	분야	근무형태	월보수*	
계약직	경력	5급	사무(홍보)	전일제	• 2,656,500원(기본급 2,516,5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	경력	5급	귀어귀촌 정책상담	전일제	• 2,082,800원(기본급 1,942,8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	신입	5급	전 분야	전일제	• 2,538,900원(기본급 2,398,900원, 급식수당 140,000원)

* 급식수당, 4대보험 포함(법정수당 외 별도 수당, 성과연봉 등 미포함)

※ 계약직은 추후 업무평가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최대 24개월(귀어귀촌 정책상담 분야의 경우 최대 36개월) 근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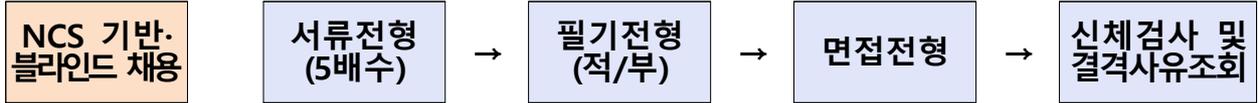
※ 회계연도 중 3개월 이상 근무 시 연말에 실시되는 평가에 따라 성과급 일괄지급(귀어귀촌 정책상담 분야의 경우 기본급의 20% 지급)

※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채용분야 관련 경력은 월보수에 추가 산정되어 지급(응시자격요건 경력에 최대 4년 추가 산정 / 단, 귀어귀촌정책상담 분야 제외)

※ 채용유형별 연봉, 승급 등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규정을 따름

2 전형절차 및 일정

□ 채용절차



※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모든 전형(결격사유 조회 포함)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(임용예정자) 선발

□ 채용일정

전형절차	일정	비고
사전공개	`23.2.2.(목) ~ `23.2.5.(일)	공단 홈페이지
공고	`23.2.6.(월) ~ `23.2.20.(월)	공단 홈페이지, 알리오 등
지원서 접수	`23.2.13.(월) ~ `23.2.20.(월) 13:00	온라인 접수(채용 홈페이지) - https://fipa.recruitlab.co.kr - 우편, 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`23.2.23.(목) 18:00 이후	채용 홈페이지
필기전형	`23.2.26.(일)	온라인 검사 실시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	`23.3.2.(목) 18:00 이후	채용 홈페이지
면접전형	`23.3.8.(수) ~ `23.3.9.(목)	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지원서 증빙서류 지참(별도 공지)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`23.3.16.(목) 18:00 이후	채용 홈페이지
신체검사·결격사유 조회	`23.3.17.(금) ~	세부 서류 별도 공지
최종합격자 발표	`23.3.24.(금)	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
인사발령(예정)	`23.3.31.(금)	-

※ 각 전형 일정은 공단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 전형기준

전형	구분	평가기준 및 평가방법
서류 전형	경력직	• 경력사항, 자격증, 한국사능력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우대가점 등
	신입직	• 교육사항, 자격증, 한국사능력,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, 우대가점 등
필기 전형	전 직무	• 온라인 인성검사
면접 전형	전 직무	• 집단면접 및 개별면접 - 전문성, 직장인으로서의 자세 및 인품,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, 의사 발표 및 표현력, 직장능력 등

4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3. 2. 13.(월) ~ 2. 20.(월) 13:00 까지
- 접수방법: 우리 공단 채용홈페이지(<https://fipa.recruitlab.co.kr>)에서 온라인 접수
 - 채용공고문, 직무기술서, 지원서 작성방법 등을 반드시 정독 후 작성
 -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
 - 전형별 시간, 장소, 합격자 확인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

5 제출서류

- 서류전형: 공단 채용홈페이지(<https://fipa.recruitlab.co.kr>)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입력(별도 제출서류 없음)
 - 자기소개서 및 경력직 직무수행계획서(채점비중이 크므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란, 무의미한 문구 반복, “그런 경험 없음” 등 불성실 기재시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)
- 면접전형: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이 있는 서류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해당 관청·기관에서 발급한 원본 서면제출

-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졸업(예정)증명서(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한함/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병적증명서(남성지원자 및 병역 해당자에 한함)
- 해기사면허, 상급안전교육,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증빙서류(선박 직무 지원자에 한함)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, 해당기업에서 발급한 수행업무가 명시된 근무처별 경력증명서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(경력사항 작성 지원자에 한함)
-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성적증명서 및 직업교육수료증(해당자에 한함/최근 3개월 이내 발급)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어학성적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6 기타사항

-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학력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,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, 각종 증빙 서류는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합니다.
- 공통 자격요건,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입사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 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
-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 후라도 임용이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지원에 제한됩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채용서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로부터 180일간 보관 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공단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 '공지사항 및 FAQ'와 '문의하기'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
12.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1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붙임2

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〈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〉

- (비수도권 지역인재)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상의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* (예시) 단국대 천안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상명대 천안캠퍼스 등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
□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경우 광역 시·도를 기준으로 판단